

## ■ Legal Update ■

## 인도네시아 투자 인허가 시스템의 변경 및 이로 인한 인허가 업무 일시 중단

지평 인도네시아팀

2018년 6월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간편하고 통합적인 인허가 프로세스의 확립을 위해 기존의 투자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통합하는 '온라인 단일 신청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system)'(이하 "OSS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 2018년 제24호(이하 "정부 규정 제24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은 2018년 6월 29일 OSS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 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9일, OSS 시스템을 온라인 상으로 오픈하였으나, 아직 정보 입력이 불가능하여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규정 제24호의 발효로 기존의 BKPM 및 기타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던 인도네시아 투자 업무 및 인허가 발급 업무는 앞으로 OS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관련 인허가 발급 업무가 중지되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투자 승인 관련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언제쯤 정상화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시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OSS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할 예정이며 그 후 어떠한 기관에서 OSS 시스템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BKPM이 담당 부서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1. 인도네시아 투자 인허가 제도의 변화

앞서 언급한 정부 규정 제24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 인허가 절차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1) 사업 고유 번호(Nomor Induk Berusaha/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NIB")

NIB는 기존의 무역부 법인 등록증인 TDP, 수입면허인 API 및 통관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동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NIB를 취득 시, 사회보장보험인 BPJS에도 NIB 정보가 등록되게 됩니다.

### (2) 사업허가(Izin Usaha/Business License)

NIB를 취득하면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 제24호 제38조에 따르면,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토지의 취득, 건물의 건축 및 운영, 설비 시설 등의 조달, 근로자 채용, 인증 또는 품질 테스트의 완료, 생산 테스트, 상품 제조 등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3) 영업·운영 허가(Izin Komersial atau Operasional/Commercial or Operational License)

정부 규정 제24호 제39조에 따르면,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운영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영업·운영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영위할 업종에 요구되는 기준, 추가적인 인허가 및/또는 인증 요건,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Indonesian National Standard) 등록, 건전한 생산 과정 인증(CPOB), 수입 허가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영업·운영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업종은 해당 허가를 취득한 이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 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 및 운영 허가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 (2)에서 설명 드린 사업허가를 취득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사업허가가 영업·운영 허가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업종이 영업·운영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신규 도입된 인도네시아 투자 인허가 신청 절차

정부 규정 제24호 제39조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투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OSS 시스템 등록

OSS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가 자동으로 송부됩니다. OSS 시스템 등록 절차는 기존의 BKPM 온라인 시스템 등록 절차보다 간편하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 (2) NIB 신청

OSS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NIB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필요한 정보는 ① 여권 기타 신분증 번호 ② 주소 ③ 사업 목적 ④ 투자 지역의 주소 ⑤ 투자금에 대한 계획 ⑥ 인력 고용 계획 ⑦ 사업 소재지의 연락처 ⑧ 재무, 관세 및/또는 투자 설비 등과 관련된 정부 지원이나 혜택 등을 요청할 계획 ⑨ 세적 등록번호(NPWP) 등입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필요한 정보는 ① 상호 및/또는 설립 정관 또는 등록 번호 ② 사업 목적 ③ 투자 유형 ④ 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 외국인 주주의 국적 ⑤ 투자 지역의 위치 ⑥ 투자금에 대한 계획 ⑦ 인력 고용 계획 ⑧ 사업 소재지 연락처 ⑨ 재무, 관세 및/또는 투자 설비 등과 관련된 정부 지원이나 혜택 등을 요청할 계획 ⑩ 법인의 세적 등록번호(NPWP) ⑪ 법인의 고유번호 또는 담당자의 신분증 번호 등입니다.

만일 신청인에게 세적 등록번호(NPWP)가 없는 경우에는, OSS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SS 시스템이 요청하는 투자 신청 정보 및 세적 등록번호(NPWP)의 등록이 완료되면 OSS 시스템에서 13자리의 디지털 코드 및 전자 서명으로 구성된 NIB를 부여합니다. NIB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아래 사업허가 및 영업·운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사업허가 신청

사업허가는 신청인이 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요건을 구비한 것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들 수 있는 구비 조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개발이나 취득의 경우 : 지역 사용 허가(Location Permit) 또는 건축 허가의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자원 개발의 경우 : 수자원 지역 사용 허가(Water Location Permit)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환경 허가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 실행단계에서 사업허가의 취득과 위에서 설명한 건축 허가의 취득 중 선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즉, 건축 허가 신청 시 관할 기관에서 사업허가를 먼저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신청 요건을 구비한 경우, OSS 시스템은 심사를 거쳐 사업허가를 발급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래에서 설명하는 영업·운영 허가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허가 취득 후 바로 본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사업허가 취득 전에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계약 체결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행위와 영업 준비행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영업·운영 허가 신청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표준화 및/또는 인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운영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영업·운영 허가는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되며, 신청인은 영업·운영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영업·운영 허가에는 수출입, 기타 행정 인허가는 포함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운영 허가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3. 사업 확장 및 회사의 정보 변경

정부에서 발표한 OSS 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산 능력 증가 등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존 BKPM 체계에서와는 달리 별도의 사업 확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종 업종 내에서의 사업 확장의 경우에는 OSS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새로운 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이사 또는 감사 변경 등 단순한 회사의 정보를 변경할 경우, 기존 프로세스에 따라 변경을 하면 OSS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OSS 시스템 담당 공무원의 구두 확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회사의 개정 정관을 작성하고 법무부에 신고하면 OSS 시스템에 변경 내역이 자동적으로 반영되며, OSS 시스템에서 회사의 정보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인이 OSS 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담당 공무원과의 구두 확인을 통해 파악한 내용일 뿐이므로, 추후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기존에 진행되던 BKPM 업무

정부 규정 제24호 제103조에 따르면, 동 규정의 발효 전에 BKPM을 통해 위 목차 1, 2에서 언급된 승인 기타 인허가를 신청하였다면 OSS 시스템을 통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 규정 제24호가 기존 BKPM이 발표한 각종 법령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요건 및 자본 대 부채의 비율 요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BKPM 규정 기타 투자법령이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 신청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은 BKPM 및 기타 정부 기관에서 OSS 시스템으로 이관되지만, 투자활동보고서(LKPM) 제출 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아직까지 BKPM의 소관 사항입니다.

#### 5. 결론

OS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 개시되기 전까지는 투자 인허가 발급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OSS 시스템 운영 기관이 정해지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서 기존 BKPM 등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예컨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재신청 절차를 밟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신청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처리해 줄 것인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또한 OSS 시스템에서 발급할 NIB, 사업허가, 영업·운영 허가 외 허가의 발급 등은 어느 정부 기관에서 담당할지, 이를 통합적으로 OSS 시스템에서 발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 작성, 법무부 신고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언제 어느 단계에서 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아직 OSS 시스템의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및 구체적인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OSS 시스템을 통하여 투자 신청 및 인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현재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저희 법무법인은 관련 사항이 정리되거나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지평 인도네시아팀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E. yskwon@jipyong.com T. +62-21-515-0622

최유진 변호사 E. yjchoi@jipyong.com T. +62-21-515-0622

방준기 외국변호사(미국) E. jkbahng@jipyong.com T. +62-21-515-0622

####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in association with Arruanpitu & Partners)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 +62-21-515-0622 F. + 62-21-515-0699 E. indonesia@jipyong.com

<끝>